
호치민 한인회 정관 (定款)

- ✓ 2006. 09. 21. 제정 승인
- ✓ 2006. 12. 22. 제정 확정
- ✓ 2007. 01. 25. 개정
- ✓ 2007. 07. 10. 개정
- ✓ 2007. 12. 05. 개정
- ✓ 2008. 03. 07. 개정
- ✓ 2008. 05. 23. 개정
- ✓ 2009. 08. 25. 개정
- ✓ 2012. 02. 13. 개정
- ✓ 2014. 03. 28. 개정
- ✓ 2021. 03. 17. 개정
- ✓ 2023. 02. 15. 개정

호치민 한인회 정관

제 1 장 총칙

제 1 조 (명칭)

1. 본회의 명칭은 “호치민 한인회”라 칭한다.
2. 본회의 영문 명칭은 “KOREAN ASSOCIATION IN HO CHI MINH CITY”로 한다.

제 2 조 (목적)

호치민 한인회(이하 본회라 한다) 정관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,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 3 조 (소재지)

본회의 사무실은 호치민시에 위치한다. 단 사무실의 위치를 본 조와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.

제 4 조 (업무)

1. 본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, 호치민에 거주하는 한인 상호간의 친목과 번영을 도모하고 한-베 친선과 문화교류를 증진하며 나아가 양국의 상호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주 업무로 한다.
2. 호치민 한인사회가 현지사회에서 통합된 한-베 단체가 될수 있도록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적인 지위의 안정과 향상에 기여한다.
3. 호치민 한인사회의 미래 세대들을 위한 교육과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에 노력한다.
4. 기타 본회의 총회에서 의결된 활동을 한다.

제 2 장 회원

제 5 조 (회원의 구성)

1. 회원은 일반회원,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나눈다.
가. 일반회원은 베트남 호치민 인근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말한다.

- 나. 정회원 (이하, 회원이라 한다)은 일반회원 가운데 정상적인 회원가입절차를 준수한 한인을 말한다.
- 다. 특별회원은 외국인 혹은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는 한인 가운데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.
- 2.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행한다(사진부착, 여권번호, 거주지 주소 및 연락처 포함)

제 6 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- 1. 회원은 각종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임시총회 소집권과 의결권을 가진다.
- 2. 회원은 본회가 주최 및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석하고, 제공하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- 3.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상기 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- 4.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석할 의무와 회원으로 서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 및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.

제 3 장 조직

제 7 조 (회장)

- 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임원회의, 이사회, 총회의 의장이 되고, 각종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할 권한을 가진다.
- 2. 회장은 임원과 이사를 임명하며, 각 조직에 대한 지휘 감독의 책임을 가진다.
- 3. 회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한다.
- 4. 회장은 주호치민 총영사관 관할 구역 내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자로, 대한민국 법률과 베트남 법률에 따라 범죄사실증명원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.
- 5. 회장의 선출에 대한 사항은 호치민 한인회 선거관리규정(이하,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)에 따른다.
- 6. 회장의 임기 중 불가피한 사유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, 당사자인 회장 또는 수석 부회장은 그 사유 발생 즉시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를 보고 받은 이사회는 당사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를 확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후임자 선출을 위한 선거일을 정하고, 동 선거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한다. 단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신임 회장의 선출 없이 수석 부회장이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, 수석 부회장 또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한 자가 회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.
- 7. 전염병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회장 선거 지연시에는 현회장이 신임 회장

선출시까지 회장직을 유지한다.

제 8 조 (임원)

1. 임원은 회원 중에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.
2. 회장은 임원으로 수석부회장, 부회장, 본부장, 사무총장, 팀장 및 국장을 둘 수 있다.
3. 임원의 조직과 구성은 회장의 재량에 따른다.
4. 임원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
5. 회장은 임원단과 별도로 2인 이내의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.
6.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총 20인 이내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.

제 9 조 (산하단체 및 협력단체)

1. 본회는 각 역할별 운영위원회, 지역별 지부, 지회, 산하단체 및 협력단체를 둘 수 있다.
2. 회장은 운영위원회, 지역별 지부, 지회 및 산하단체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.

제 10 조 (사무국)

1.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2. 회장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관리의 책임이 있으며, 업무의 일부를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3. 사무국에서는 회장 및 임원의 활동을 보좌하고, 각종 사무에 대한 근거를 작성해서 회장 및 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 4 장 회의

제 11 조 (총회의 역할 및 기능)

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본회의 운영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당해 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의 집행결과 보고
2. 차기 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관련 사항의 결정
3. 운영위원회, 지부, 지회 및 산하조직의 활동과 보고
4. 본회의 임직원에 대한 변경사항 보고
5. 정관(회칙) 및 선거 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

6.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의결
7. 회장의 해임
8. 본회의 운영에 관한 의견 수렴
9. 기타 본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여 의장이 제출한 안건의 검토 또는 의결

제 12 조 (총회의 종류 및 소집)

1.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, 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하는 것으로 한다. 회장이 불출석, 부재 등의 사유로 회의를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수석 부회장, 부회장(연령순)의 순서로 회의의 의장이 되는 것으로 한다. 회의의 진행은 임원 중 선임된 자가 할 수 있다.
2.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.
3.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장 또는 회장을 대신하여 총회를 주재할 권한을 가지는 자가 이를 소집한다
 - 가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- 나. 이사회가 총회의 소집을 의결한 때
 - 다. 회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 총회 소집을 요청할 때
 - 라. 위 각호에 따른 임시총회의 소집이 필요한 경우 회장은 이러한 요청을 본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고, 소식지 등 제반 방법을 통해 즉시 알려야 하며,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- 마. 의결이나 “회원”의 요청이 있음에도 회장이 이를 알리지 않고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총회 소집을 요구한 “회원” 중 1인이 회장을 대신하여 임시 총회의 소집 요구를 알리고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4. 총회의 의장은 회의 개최일 30일 이내에 총회에서 다룰 사안과 총회의 일시, 장소 등을 한인회의 소식지 및 한인회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회원들의 e-mail 기타 온라인(SNS)를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(총회의 성립 및 의결 정족수 등)

1. 총회의 성립은 등록된 “회원” 10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의결이 필요하거나 선거의 경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2. 회장의 해임의 건은 출석한 회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3. 위임장은 의결권을 포함하며,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14 조 (이사회 구성 및 역할과 기능)

이사회는 총회의 권한사항을 제외한 본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심의기구이다.

1. 이사회는 구성원은 본회의 회장 및 당연직 이사인 임원진, 본회의 정회원인 이사를 포함한 50인 이내로 구성한다.
2. 이사회는 의장은 본회의 회장이 겸임한다. 회장이 불출석, 부재 등의 사유로 회의를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수석 부회장, 부회장(연령순)의 순서로 회의의 의장이 되는 것으로 한다.
3.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.
 - 가. 한인 회비 결정에 대한 심의
 - 나. 사업보고 및 결산에 대한 심의
 - 다.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심의
 - 라. 이사회가 총회에 부의 및 위임할 사항의 결정
 - 마. 정관(회칙) 개정안에 대한 심의 및 선거 관리 규정을 제외한 본회의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한 심의
 - 바. 기타 총회 의결 사항을 제외한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

제 15 조 (이사회 의 성립 및 의결)

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된다.

4. 정기이사회는 매 3개월에 1회 의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 이사회 의장이 특별한 사안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.
5.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.
6. 이사회는 불가항력 상황의 경우, 비대면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.
7.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1/3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,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출석한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.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제 16 조 (임원회의의 구성)

임원은 제8조에 따른 회장, 부회장, 본부장, 사무총장, 팀장, 국장 등으로 구성되며,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회장이 위촉한다.

제 17 조 (임원회의의 직무)

운영위원회회의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1. 선거관리 위원회 추천 및 해임

2. 회장의 보궐 선거
3. 한인회 특별 위원회 구성
4. 한인회 주요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심의
5. 한인회 분기별 재정 및 업무 심의

제 18 조 (정기회의, 임시회의)

1. 정기 임원회의는 매월1회 개최한다.
2. 임시 임원회의는 의장 또는 임원 1/3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.
3. 임원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임원 및 감사에 대하여 회의 1주 전에 통지하여야 하며, 이는 e-mail 기타 온라인(SNS)를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.
4. 임원회의는 불가항력 상황의 경우 비대면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.

제 19 조 (임원회의 의결 정족수)

1. 임원회의는 본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,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2.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.
3. 임원의 징계 및 주요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재적 임원 2/3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회에 부의한다.

제 5 장 재정

제 20 조 (수입)

본회는 다음을 수입으로 한다.

1. 회비
2. 기부금 및 찬조금
3. 사업수익금
4. 기타의 수익금

제 21 조 (회계연도)

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.

제 22 조 (결산보고)

회장은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회계년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, 감사의 의견을 득한 후, 감사의견을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회계년도의 다음 해

2월 10일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사회는 회계연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를 심의하고, 심의된 보고서가 한인회 소식지 및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되도록 하여야 한다

제 23 조 (자산의 정의)

본회의 모든 자산은 한인회 명의로 한다.

제 24 조 (부채에 대한 책임 및 자산의 인수)

1. 신임회장은 취임 시, 전임회장 퇴임 시점에 결산한 본회의 모든 자산 (금전 및 물적 자산)을 인수한다.
2. 전임회장은 재임기간 동안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 및 발생한 부채에 대하여 책임진다.

제 6 장 부칙

제 25 조 (징계)

1. 징계의 사유

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을 행할 수 있다.

- 가. 본 정관 제9조(금지행위)에서 정하고 있는 본회의 회원에게 허용되지 않는 행위
- 나. 본 정관 제8조(의무)에서 규정된 의무를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행위
- 다. 본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
2. 징계의 종류

가. 본회의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과 징계 처분을 대상자에게 행할 수 있다.

- 서면 경고 또는 형사 고발, 고소
- 회원 자격의 정지
- 제명

나. 전항에 따른 회원 자격의 정지는 1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기간을 정하여 행할 수 있다.

다. 본 조에 따른 제명 처분을 받은 회원은 제명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본회에 재 가입할 수 없다. 본회의 회장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 영구제명을 할 수 있다.

3. 징계의 절차

회장은 본회의 회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지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서면을 이를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이사회에 제출하여 적절한 징계 처분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.

가.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이사회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5인의

이사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과정에서 징계위원회는 해당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 징계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이사회는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의 유무 및 종류에 대한 의결을 이사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.

- 나. 전항에 따른 회장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회원은 징계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 재심의 요청을 받은 회장은 전체 이사회에 재심 요청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요청하여야 하며, 이러한 요청을 받은 이사회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 심의로 판단을 하여야 한다. 재심 과정에서 이사회는 해당 회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- 다. 회장은 징계의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따르게 할 수 있다.

제 26 조 (포상)

- 1. 회장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하거나 한인사회 및 주재국 현지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- 2. 회장은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따르게 할 수 있다.

제 27 조 (서류의 관리)

- 1. 회장은 정관, 규정, 자산 목록, 각 종의 계약서, 총회의사록, 이사회회의록,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을 사무국에 보관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.
- 2. 회장은 회원이 전항의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.

제 28 조 (정관의 효력)

- 1. 본 정관은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의하는 즉시 효력을 가진다.
- 2. 본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규정을 정하도록 한다.